

2018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자를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로 하되, 수급자(보호자)의 간단한 면접을 통하여 서비스를 조율하여 협의되면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적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 또는 가족수발부담을 호소하는 가정에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등 등급 외의 클라이언트가 부담하지 않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신원인수 방법: 계약서상 보호자,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센터
 -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을 요구할 수 있고,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이용료의 누적 체납, 연락두절 등 본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상자를 대행하여 책임을 이행하고 입소자의 거취를 책임지며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5. 계약의 해제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월한도액 변경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2018년	1,396,200	1,241,100	1,189,400	1,085,900

◇ 방문요양 수가표 (1일당)

분류번호	분 류	2018년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3,540
가-2	60분 이상	20,790
가-3	90분 이상	27,880
가-4	120분 이상	35,200
가-5	150분 이상	40,000
가-6	180분 이상	44,220
가-7	210분 이상 (1, 2등급자만)	48,110
가-8	240분 이상 (1, 2등급자만)	51,710